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 추진 방법을 개선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피해보상 요건, 산정기준, 피해 조사방법 등 변경(안 제4조~제8조)
- 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농업인등“”을 ““농업인등””으로, ““농작물등“”을 ““농작물등””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 연도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4.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제5조제1항 본문 중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

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을 “피해면적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를 따른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등은 유사작물로 적용하거나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동일지역의 농작물등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1. 견고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이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 : 피해액의 80%
2. 경미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해액의 50%
3.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피해액의 30%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을 “다음”으로, “첨부하여 관할지역”을 “관할지역”으로, “15일”을 “5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해보상신청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② 읍·면·동장은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보한 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④ 시장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피해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구미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보험료, 재료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피해개황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성 별	
	④ 주 소			
	⑤ 조 사 일 시	년 월 일		
	⑥ 피 해 지 역			
	⑦ 피 해 면 적	m ²	⑧ 가 해 동 물	
	⑨ 피 해 내 용			
피해액 산정	⑩ 산 정 내 역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 등		
	⑪ 피 해 액			
조사 의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2매 이상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피 해 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성 별	
	④ 주 소			
	⑤ 조 사 일 시	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⑥ 피 해 지 역			
	⑦ 피 해 면 적		⑧ 가해야생동물	
	⑨ 피 해 내 용			
	⑩ 피 해 보 상 금 산 정 내 역			
	⑪ 피 해 보 상 금			
기타 의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0 0 0 귀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성 별	
	④ 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⑤ 피 해 보 상 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인(이하 “ <u>농업인등</u> ”이라 한다)이 구미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 <u>농작물등</u> ”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 ----- ----- ----- “ <u>농업인등</u> ”----- ----- ----- “ <u>농작물등</u> ”----- ----- -----.
제4조(피해보상 요건) (생 략) <u><신 설></u>	제4조(피해보상 요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u>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 연도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생략)

② 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동일지역의 농작물등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등 수확 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1. 견고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이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 : 피해액의 80%

2. 경미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해액의 50%

3.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피해액의 30%

<삭 제>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

다음 -----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지역 읍·면·동장에
게 피해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
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피해내역서

4. (생 략)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
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
인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
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피해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
우 현지 확인 등 피해 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 관할
지역 -----
----- 5일 -----
-----.

1. 피해보상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 제>

<삭 제>

2.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읍·면·동장은 피해보상 신
청을 접수한 즉시 시장에게 이
를 통보한 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
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신 설>

제8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신 설>

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④ 시장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피해 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 절차) ① -----
제7조제3항-----
----- 별지 제2호서식-----

-----.

② -----

----- 별지 제3호서식-----

-----.

-----.

③ (현행과 같음)

④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제10조(포획 신고) 제9조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u>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내</u>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u><신 설></u>	<u>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u> 제10조(포획 신고) ----- ----- ----- ----- ----- <u>시장</u>----- -----. 제13조(수당 및 여비) ----- ----- ----- <u>범위</u>----- ----- -----. 제14조(피해방지단 운영) ① <u>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구미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② <u>시장은 피해방지단 활동에</u>
---	--

<u>따른 보험료, 재료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③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 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군·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 활동비 및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39,000천원(①+②)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① $30,000\text{원} \times 30\text{명} \times 30\text{회} = 27,000\text{천원}$
 - 1회 출동 시 30,000원 (1인 교통비, 유류비, 경비 등)
 - ② $400,000\text{원} \times 30\text{명} = 12,000\text{천원}$
 -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시 안전을 위한 수렵보험 가입

4. 작성자

- 환경보전과 생태환경담당 행정8급 김 정 록 (054-480-5293)

소 관 부 서		환경보전과
입 안 자	과 장	우 준 수
	담 당	손 양 숙
	담 당 자	김 정 록 (480-5293)